### [서식 예] 전부금청구의 소(집행권원 : 확정판결, 임금 및 퇴직금)



# 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주식회사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) 대표이사 ◈◆◆ 전화·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전부금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소외 ●●●에 대하여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소○○○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같은 법원으로부터 "소외 ●●●는 원고에게 금 ○○○원 및이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○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"는 판결을 받았는데, 소외 ●●●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2. 그 뒤 원고는 소외 ◉◉◉에 대한 위와 같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

소외 ●●●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급료, 제수당, 퇴직금 등의 채형 관하여 ○○법원 20○○타채○○○호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○○. ○. ○○.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뒤 확정되었습니다.

- 3. 한편, 소외 ●●●는 20○○. ○○. ○.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20○○. ○.부터 같은 해 ○월까지의 ○개월분의 급료·제수당 및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/2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,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전부금 ○○○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용하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부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소외 ●●●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

1. 갑 제2호증 위 결정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 2000.
 0.
 0.

 위 원고
 000
 (서명 또는 날인)

##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_1 ~1 ~1 ~1	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 <u>소멸시효 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</u>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
비용	·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
н н ы ы	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
및 기 간	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	・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은 "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
	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"고 규
	정하고 있는바, 이는 집행채권자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에 대
	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상응하여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
	이 변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 것으
	로 해석된다. 그러므로 채권자가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
	약속어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
	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
	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고, 이는 집행채무자가 채무의
	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인 출연을 한 것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어
	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됨(대법원
	2009.2.12. 선고 2006다88234 판결).
	·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
기 타	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
	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,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발생
	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, 가
	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
	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
	2002다7527 판결).
	·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
	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
	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,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
	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
	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,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
	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
	졌다면 구 민사소송법 제564조(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) 단서에 의하
	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됨(대법원
	2002. 7. 12. 선고 99다68652 판결).
	·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
	게 이전되는데,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
	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·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
	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,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
	짐(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, 제5항, 제7항).
	·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
	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
	행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함(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15439 판결).
	○게 근 프 크 기 글 ○ E (게 답 단 1330, O, 21, 근 포 30억 13403 현연).

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법인,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,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. 한편, 외국법인,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・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 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